

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6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3. 16.	회부연월일	2022. 3. 16.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방재정법」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1.7.13.)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지급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(안 제1조)
 - 「지방재정법」 →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경우 규정(안 제4조)
- 다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5조)
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- 라.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3조~제40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21. 7. 13.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